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5225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종문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1.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5개 소종중 가운데 하나로, 2016. 2. 5. 대종중이 소유 명의자인 [redacted]시 C 임야 25,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시가표준액 747,84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174,610원 및 지방교육세 2,243,530원, 농어촌특별세 1,495,690원 합계 29,913,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니라 총유물 분할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세액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6. 5. [redacted]도지사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7. 8.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0.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3.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대종중을 구성하는 소종중인 원고는, 대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총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총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이 적용되어 아래 표 중 음영 부분 기재와 같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임을 전제로 같은 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과세표준	적용법률	취득세		지방교육세	
747,846,000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세율	3.50%	세율	0.30%
		세액	26,174,610원	세액	2,243,538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6호	세율	2.30%	세율	0.06%
		세액	17,200,458원	세액	448,707원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종중은 종중 규약 제6조에서 종원자격을 'D 시조 E의 59세손 F의 후손'으로 정하면서, 부칙 제5조에서 '규약 제6조 종원의 자격 범위는 59세손 F의 후손 중 G, H, I, J, K의 후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종중은 2015.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redacted]시 L 임야 67,51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대종중 규약 부칙 제5조에 규정된 '59세손 F의 후손 중 G, H, I, J, K의 후손'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의결하고, 2015. 10.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약 부칙 제5조의 위 각 후손별로 구성된 소중중에게 이 사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분할 전 토지의 분할에 따른 위치선정에 대하여 의결(이하 위 각 이사회 의결을 통틀어 '이 사건 이사회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3)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11. 17. [redacted]시 M 임야 66,538㎡로 전환되었고, 2015. 11. 19.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N 임야 9,931㎡(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표시하기로 한다), O, P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4) 원고를 비롯한 각 소종중은 위 각 분할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각 소종중별로 취득한 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공동시조	종중명	취득 토지(지번 / 면적)
대종중	F	B종중	.
소종중	J	Q 종중	P / 11,253㎡
소종중	G	R 종중	O / 11,252㎡
소종중(원고)	K	A종문	C / 25,180㎡
소종중	I	S	N / 9,931㎡
소종중	H	T종중	M / 10,922㎡

5) 한편, 과세 관청은 소종중 중 하나인 S이 대중종으로부터 N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6. 11. 30. 증여세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소종중이 2016. 12. 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는데, [redacted]세무서장은 2017. 2. 9.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과세예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부동산 취득세의 세율을 그 취득원인에 따라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의 세율 1천분의 23(농지) 또는 1천분의 28(농지 외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이상 제1호), 상속 외의 무상취득 시의 세율 1천분의 35(제2호)와 별도로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시의 세율을 1천분의 23(제6호)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공유물의 분할(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 포함)로 인한 취득 시의 세율(제5호)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6호가 부동산의 취득원인으로 규정한 '총유물의 분할'은 민법상 명문의 근거규정(제268조 이하)이 있는 공유물의 분할과 같이, 법인이 아닌 사단 내부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총유재산을 나눔으로써 기존의 총유관계를 종료하고 구성원들 각자의 단독소유권 또는 새로운 총유관계를 창설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대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총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원인이 '2015. 12. 30.자 증여'로 기재되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처분문서인 2015. 12. 30.자 증여계약서도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부동산등기실무(등기선례)상 '총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형식적인 등기원인 기재만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파악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17조가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 방법이다.

② 원고를 포함한 5개 소종중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종중에게 분할하기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각 분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원인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법인 아닌 사단인 대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총유물에 해당하고, 원고를 비롯한 5개 소종중들은 대종중 규약에 따라 대종중의 종원 지위를 가지므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총유물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 토지를 대종중의 종원인 소종중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총유물의 분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③ 이 사건 토지의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원고는 수증자로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으므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소중중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에 관하여, 위 과세예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채택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권덕진

판사 정세진

판사 강정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취득물건(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2조의 세율(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0.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분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16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끝.